

부 산 지 방 법 원
행정부
[2018구단21648]

사 건 명 :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원 고 : 원고1, 원고2, 원고3

부산 영도구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1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9. 6. 19.

판결 선고 : 2019. 7. 1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

청구취지

피고가 2018. 6. 12.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 ○○○는 망 ○○○(이하 '망인' 이라고 한다)의 배우자이고, 원고 ○○○, ○○○은 망인의 자녀들이다.

나. 망인의 명의로 2015. 6. 26. '요양신청서'가 작성되었는데, 그 사유는 '망인이 ○○○○○○ 기관사로 2015. 5. 1.부터 일하다가 2015. 5. 28. 21:30경 배에서 수리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자택 앞에서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면서 위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'는 것이었다.

다. 원고들은 2018. 6. 1.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, 피고는 '승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'는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처분' 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갑 제9 내지 11호증(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들의 주장 및 쟁점

망인은 2015. 5. 28. 아침 6:30부터 ○○○에 있는 선박에 기관사로 출근하여 오후 8시경 귀가하였는데 거주지 현관 앞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갑자기 뒤로 넘어 졌고, 119 응급차량으로 ○○대학교 병원에 이송해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4일 후 사망하게 되었다. 망인이 1개월간 선박수리 작업을 하며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술을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고, 이와 같은 사망은 '승무 중 직무외 사망'에 해당한다.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망인이 '승무 중' 이 아니었다고 다룬다.

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보되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'직무' 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망은 '승무 중' 에 발생한 사망인 경우에 한정된다(제27조 제2항 및 제28조,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장례비는 선원법 제10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의 일부만을 부보하고 있다고 보인다). 망인의 사망이 직무와 관련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, 사망 당시 망인이 '승무 중' 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.

나. 관련 법령

별지와 같다.

다. 기초사실

1) 망인의 근무 경력 및 선원근무계약의 체결

① 망인은 1991. 5. 8.경부터 ○○○○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, ○○수산의 ○○○○○호에 기관장으로서 2014. 9. 11. 승선하였다가 2015. 5. 4.(음력 3월 16일) 하선하였다.

② 2014. 5. 27. ○○○○수산업협동조합과 ○○○○선원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3장 인사

제10조(선원고용) ① 선주는 선원을 자유로이 고용하고 그 명단을 ○○에 통보한다.

제4장 근로조건

제17조1(휴업기) 어자원 보호와 경영합리화를 음력 3월 14일부터 음력 4월 14일까지 의무휴업하여 이후 출어시기는 자율로 정한다.

① 휴업기간 중의 임금은 100% 지급한다.

② 휴업기간 중 선박정비(어망작업포함)는 휴업기 초, 말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9일간으로 한다.

③ 회사는 선박정비(어망작업 포함)자 및 당직자의 숙식을 제공한다.